

#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

(전경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23. 8. 25.

발의의원 : 전경원, 김태우,  
류종우, 박소영,  
박종필, 육정미,  
이재숙, 전태선,  
조경구, 허시영  
의원(10명)

## 1. 제안 이유

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 0.78의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, 대구광역시 각급 학교 학생들이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교육감의 책무 및 인구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~제5조)
- 나. 인구관련 자문을 위한 전문가 협의,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~제8조)
- 다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## 3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불임
- 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의 중요성과 저출산·고령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구교육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결혼·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2. “저출산·고령화 문제”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사회 문제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제4조(책무)** 대구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들에게 인구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
2.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·연구에 관한 사항
3. 인구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
4.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
5. 그 밖에 교육청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**제6조(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)**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전문가 협의)**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, 공청회,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8조(교직원 연수)**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관련 기관·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·단체 및 대학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9조(협력체계 구축)** 교육감은 효율적인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 광역시장, 구청장·군수 및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붙임)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7조의2(인구교육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결혼·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